

발송번호: 9-5-2022-075842848  
발송일자: 2022.10.05.

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6, 3층(서초동, 준영빌딩)(특허법인필앤온지)  
특허법인필앤온지[안호승] 귀하



## 특 허 청 특허결정서

출 원 인 성 명 하인, 로버트 제임스 마크 (특허고객번호: 620210848672)  
주 소 지브랄타 퀴즈웨이 미드타운 12 프로비던스

대 리 인 명 칭 특허법인필앤온지  
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6, 3층(서초동, 준영빌딩)(특허법인필앤온지)  
지정된변리사 안호승 외 1명

발 명 자 성 명 하인, 로버트 제임스 마크  
주 소 지브랄타 퀴즈웨이 미드타운 12 프로비던스

출 원 번 호 10-2021-7036170

발 명 의 명 칭 블록체인을 통한 뷰 증명(Proof of View) 시스템 및 방법

청 구 항 수 16

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.  
(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.) 끝.

[우선권주장]

우선권주장국가: US, 우선권주장번호: 17/192,045 (우선권주장일자: 2021.03.04)

[참고문헌]

1. US20190244241 A1

### [직권보정 사항]

번호	보정항목	보정위치	보정전내용	보정사유	도면보정 내용
			보정후내용		
1	청구범위	청구항 5	청구항 1에서, 상기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계약 조건들을 검증하는 것은, 중앙 기관 또는 외부 법 집행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의 엔티티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계약들 및 트랜잭션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, 뷰 증명 검증 시스템.	명백한 오기	X
			청구항 1에서,		

			<p>상기 다수 <u>의</u>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계약 조건들을 검증하는 것은, 중앙 기관 또는 외부 법 집행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의 엔티티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계약들 및 트랜잭션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, <u>뷰 증명 검증 시스템</u>.</p>		
2	청구범위	청구항 18	<p>청구항 12에서,  상기 콘텐츠 뷰 데이터는 상기 콘텐츠 뷰 데이터에 대한 공개 액세스를 차단하는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 저장되는, 방법.</p> <hr/> <p>청구항 12에서,  상기 콘텐츠 뷰 데이터는 상기 콘텐츠 뷰 데이터에 대한 공개 액세스를 차단하는 컴퓨팅 디바이스 상에 저장되는, <u>뷰 증명 검증</u> 방법.</p>	명백한 기	오 X


2022. 10. 05.

특허청

전기통신기술심사국

방송미디어심사팀

심사관 김건우

김건우 

<< 안내 >>

【 직권보정 안내 】

1.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(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)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3. 직권보정 사항은 등록공보에 함께 기재됩니다.

【 분할출원, 재심사 청구 및 전자등록증 발급 】

1.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(다만,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)에 분할출원할 수 있습니다(재심사청구한 이후는 제외).
2.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재심사 청구 시에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.
3. 2018. 7. 1. 설정등록부터는 특허로(<http://www.patent.go.kr>)에서 「전자등록증 신청」을 사전에 하거나, 납부서(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)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면 「전자등록증 수신함」을 통해 전자등록증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, 전자등록증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.

※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로,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방송미디어심사팀 ☎042-481-5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특허로([www.patent.go.kr](http://www.patent.go.kr)) 또는 특허청([www.kipo.go.kr](http://www.kipo.go.kr))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 상황,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 
(특허청)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